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. 27
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선물거래소의 부산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유치조건으로 제시한 양해 각서의 성실한 이행과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완화해주고자함.

### 2. 주요골자

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선물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규정 신설

### 3. 관계법령

가.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

나. 부산광역시 세정 13400-2618('98. 12. 7)시달공문

##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)

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선물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27조의2(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)  <u>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선물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u></p>